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재 실시 및 전담인력 배치 등 >

■ 소병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7650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은호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재실시 및 전담인력 배치 등	3

I. 개요

1. 소병훈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7650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소병훈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6. 3. 20.
- (3) 회 부 일 : 2026. 3.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시설로 하여금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안전점검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안전점검 실시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사회복지시설이 노후화되거나 안전에 취약하여 빗물 누수, 화재위험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제때 시설 개·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부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안전점검을 시설의 자체 점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행정청의 현장 확인 등 관리체계를 보완하고, 안전관리 실무 전담인력 배치 등을 통해 상시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의 자체 안전점검 결과를 제출받은 후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시설 현장을 방문하여 재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의 규모나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안전관리 실무 전담인력을 필수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4, 제34조의5 및 제34조의6 신설 등).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재 실시 및 전담인력 배치 등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속 공무원 및 관계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시설의 안전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안 제34조의4),

시설의 장에게는 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지휘·감독 의무를, 시설의 운영자에게는 안전관리 실무 전담인력 배치의무를 규정하고(안 제34조의5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u>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u> 하여야 한다.	② ----- ----- ----- <u>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u>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결과를 받은 후 필	③ ----- -----

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운영자
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
(改修)·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시설의 운영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개수·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 안전점검 시기, 안전점검

-----소속 공무원 및 관
계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시설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의 안전
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재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된 시설의 운영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改修)·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운영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 -----
-----제1항 · 제2항 및
제4항-----

-----, 이 경우 노
후화 정도가 심하거나 안전에
특히 취약하여 시급한 개수 ·
보수가 요구되는 시설을 우선
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⑥ 제1항-----

기관 및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

제34조의5(시설 안전관리) ① 시설의 장은 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를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운영자는 안전관리 실무 전담인력을 시설에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 실무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범위는 시설의 종류·면적 및 시설 이용자의 수·유형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6(시설 안전관리 교육)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장 및 제34조의5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무 전담인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에 관한

	<u>업무를 보건복지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u> <u>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u>
제34조의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생략)	제34조의7(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현행 제34조의5와 같음)
제58조(과태료) ① (생략)	제5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른 명령, 같은 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1조의4, 제18조제6항, 제24조, 제31조, 제34조의3, 제34조의4, 제37조, 제38조제1항·제2항 또는 제4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 ----- -----제34조의4제1항·제2항·제4항, 제34조의6제2항----- ----- ----- -----.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34조의4¹⁾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改修)·보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요구에 따라야 함.

- 현행 복지부 주관으로 매년 하·동절기에 정기적으로 실시 중인 안전점검 대상 사회복지시설 수는 약 2.5만여 개소임.

□ 개정안은 현행 안전점검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사회복지시설에서 노후화, 빗물 누수, 화재위험 등 안전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그에 따른 개·보수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시설의 자체 점검만으로는 점검의 객관성이나 후속조치의 실효성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행정청의 현장 확인을 통해 관리체계를 보완하고 시설 내 안전관리 실무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상시적 대응 역량을 높이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현행법 제51조제1항²⁾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1)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 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결과를 받은 후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운영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改修)·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운영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개수·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 안전점검 시기, 안전점검기관 및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으므로, 현행 규정만으로도 시설이 제출한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인력³⁾을 통하여 재점검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현행법 제54조⁴⁾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벌칙을 규정하여 감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재점검을 실시하더라도 동 조항을 재점검 실시 결과에 따른 시설 개보수 등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보기에는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실효성 확보 수단도 벌금으로 규정할지 과태료로 규정할지에 대해서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재점검 규정은 기존 제51조제1항의 규정과

제51조(지도·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3)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⑦ 지도·감독 기관은 사회복지 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에 있어 필요한 경우 촉탁할 수 있으며 촉탁받은 자의 업무범위와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3(촉탁받은 자의 업무범위와 권한) ① 법 제51조제7항에 따른 촉탁받은 자의 업무범위와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지도·감독기관이 보고받은 사항 또는 제출받은 관계 서류 등의 검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의 제공
2.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에 관한 자문

4) 「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검사·질문·회계감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의 관계 및 불응 시 제재수단 등을 함께 고려하여 정교화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현행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입법 취지를 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둘째, 시설마다 안전관리 실무 전담인력을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것은 지역 및 시설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⁵⁾

특히 현행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라 이미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시설 내 안전관리 책임성과 대응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에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므로, 전담인력 의무 배치보다는 기존 인력 중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일정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시설 규모 등에 따라 전담인력 배치와 안전담당자 지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셋째, 「지방자치법」 제117조⁶⁾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임·위탁하려는 경우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 교육 실시와 관련된 업무의 위탁 근거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5) 사회복지시설은 규모, 기능, 입소자 특성 등이 매우 다양하며, 특히 소규모 시설이나 지방 소재 시설의 경우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제한적이고 인건비 재원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관리만을 전담하는 별도 인력을 채용하도록 하는 것은 시설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6)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교육의 실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볼 수 있고, 이를 관련 기관 등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조례 또는 규칙에 그 근거를 두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다만, 교육의 실시기관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통해 각기 달리 정하도록 할 경우, 교육 내용과 운영 수준에 편차가 발생하여 안전관리 체계의 전국적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자치사무의 경우에도 수탁기관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위임·위탁 여부 및 수임·수탁기관을 정하도록 위임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안전관리 교육 업무의 위탁 근거를 조례로 규정할지 대통령령으로 규정할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현재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등의 기관에서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 중임.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나, 제도 실효성 확보 및 안정적 제도 안착을 위해 “안전관리 실무 전담인력 배치”, “시행시기” 등 일부를 수정하여 수용하고자 함.

안전관리 실무 전담인력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시설 안전전반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즉각 대응하는 “안전관리 실무인력(겸임)” 배치로 일정 수준의 행정 목적 달성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고,

시행시기는 법 개정애 따른 하위법령 신설, 교육인프라 정비, 현장제도 안내 등 행정적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1년”으로 유예할 필요가 있음.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개정안 제34조의5에 따른 안전관리 실무전담인력 필수배치에 관련하여, 안전관리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지역과 시설 여건마다 상이한 의견으로, 별도의 인력 배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함.
-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시설 개보수 비용에 대한 국가나 지자체 지원을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수정이 필요하고, 안전관리 실무전담인력 배치를 위해 국가나 지자체의 예산 지원이 필요함.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안전관리 실무전담인력 배치를 위해 국가나 지자체의 예산 지원 근거 신설 필요
- (대전 서구청) 시설 안전관리 실무 전담인력 확보 곤란하며, 재원 확보 대책이 선행될 필요가 있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근거가 있어 중복되므로 개정안 제34조의6(시설 안전관리 교육)은 삭제 필요

문 의 처
02)6788-5497